

Jisung Horizon Newsletter

January 2009 Vol.2. No.1

01 [특별초대석] IP · IT칼럼

-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교훈 (최승수 변호사)
- 미키 마우스의 80회 생일에 부쳐 (이은우 변호사)
- 新지식재산권 분쟁 - 체계적 관리체계 필요 (김범희 변호사)

09 법률칼럼

-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정원 변호사)

11 열려라 중국

-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 (김이태 변호사)

13 생생 러시아

-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최수진 변호사)

15 Vietnam LIVE!

- 베트남 현지기업 해산에 관한 소고 (김주현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18 주목! 이 판례

- 광고용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제한과 처벌(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8도7061 판결)

23 최신법령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
-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완화
-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25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2009년도 시무식 개최

26 업무동향

- 지평지성, (주)벨웨이브 M&A 매각 주관사로 선정

27 지평지성 단신

- 김범희 변호사, 로앤비 강좌 “지적재산권 실무의 쟁점” 강의 / 저작권위원회 평가회의 참석
- 이소영 변호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법적 이슈'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교훈



최승수 변호사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 쌓여 있어 이를 일일이 삭제해야 하는 고통을 주는 스팸 이메일 또는 각종 광고성 이메일은 전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는 스팸머들이 활동이 뜸해서라기보다는 사무실 컴퓨터 서버에 설치된 스팸차단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팸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번 지워야 하는 수고로 짜증이 나지만 한편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정크 메시지를 보내 수익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그들이 어떻게 내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는지 내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서 잘못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최근 미국 UC 버클리 등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가짜 의약품 광고 스팸을 보내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6일 동안 3억 5천만 개의 이메일을 보낸 결과 28건의 판매가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응답률은 0.00001%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이 누적될 경우 나름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는 있는 수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보다는 오히려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유효한 응답률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메일이든 문자메시지이든 그것이 스팸이라고 홀대받더라도 매출성사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으므로 꾸준히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판매자는 끊임없이 유효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찾게 되고 적법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라도 고객정보를 입수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보면서 그 프로세스를 대강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운영자의 실수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부직원 또는 거래처 심지어 외부 해커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빼내지기도 합니다. 올해 언론에 보도된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건만 해도 옥션, 하나로텔레콤, GS 칼텍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실제 드러나지 않은 유출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정보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정보 침해 및 주민등록 번호 훼손·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신고건수가 2만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범죄는 2005년 1천251건이었으나 올해 2천400건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200곳을 비롯해 기업과 대형 포털 사이트가 최근 10대들에게 무더기로 해킹당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조차 따라할 수 있는 초보적인 해킹 기술만으로 대부분의 학교나 기업들의 보안체계가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어느 보안전문업체의 진단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00여 개 정도의 공공기관, 대기업,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모의해킹을 해본 결과 90% 정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개인정보유출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사건도 아니며, 제2의 옥션 사태, GS칼텍스 사태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4만여 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1인당 약 10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408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손해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례로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피고 회사와 같이 다수의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업체에게는 그 사업과정에서 알게 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에 더 고도로 발달될 정보 사회에서의 개인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사용되지 않는 않았지만 그러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진다. 개인정보의 숫자가 수백만, 수천만 건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업으로서는 가히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시대에 즈음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이를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과 입법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의 입장에서도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대책이 절체절명의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한번 유출사고가 터지게 되면 기업 이미지가 회복할 수 없이 추락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피해배상액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어 자칫 파산에 이를 염려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안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도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출사고의 70%는 내부직원 에 의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점검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인터넷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사 기 법이고 최근 대검찰청에도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개관하여 주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하여 각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 출되었는지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시대에서 고객정보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칫 그 정보 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 영자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제 기업의 필수적 비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IP·IT팀은 [Inews24에 \[지평지성 법률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정기 기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초대석 - IP · IT칼럼②)

미키 마우스의 80회 생일에 부쳐



이은우 변호사

지난 11월 18일 '미키 마우스'가 80회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연보를 보니 체게바라, 엔리코 모리코네, 노엄 촘스키, 앤디 워홀, 중국의 이붕, 주룽지 총리 등이 같은 1928년생으로 동갑입니다.

타임(Time)지는 생일날 80회 생일을 맞은 미키 마우스의 약사(略史)를 실었습니다(Claire Suddath). 약사에서 80살이 되었어도 '흰 머리 하나 없고', '쾌활한 얼굴'의 미키 마우스가 산타클로스보다 더 유명인이라고 합니다. 해리 트루먼 이후 역대 미국대통령들이 1명을 빼고 모두 미키 마우스와 기념사진을 찍었다고도 합니다. 80살이 되는 동안 미키 마우스는 수 많은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고, 아카데미 영화상도 탔고, 타임이나 뉴스위크지 등의 커버 스토리의 주인공도 되었습니다. 3-11세의 어린이의 98%가 미키 마우스를 안다는 것이 디즈니사의 주장이라고 합니다(Time, 2008. 11. 18.).

큰 동그라미 한 개와 작은 동그라미 두 개로 누구든지 쉽게 얼굴을 그릴 수 있다는 미키 마우스는 역사 이래 가장 대중적인 캐릭터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애완견 플루토를 기르는 낙천적인 성격의 미키 마우스는 '할 수 있다'는 정신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가 사랑받는 이유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졌고, 그 것이 아주 인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쾌활한 미키 마우스는 포브스(Forbes)지에 의해 2003년에도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캐릭터로도 뽑혔는데, 당시 1년간 약 58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타임지의 보도를 보면 오늘날도 미키 마우스 관련 상품은 디즈니사의 소비자 상품 판매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Time, 2008. 11. 18.).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그래서일까요, 미국에서 미키 마우스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또는 Sony Bono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법인 저작물의 경우 75년에서 95년으로 20년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2003년 저작권 소멸을 5년 앞두고 있던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을 연장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로써 미키 마우스에 대한 디즈니사의 저작권은 2023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에 대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L.A. Times, 2008. 8. 22.) 미국의 1909년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를 해 주지 않았었는데, 1928년에 발표된 디즈니사의 미키 마우스 영화에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928년생인 미키 마우스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미키 마우스는 미국에서도 법인 저작물(단체 명의 저작물)로 보는데, 우리 저작권법의 경우 1987년 개정법 이전에는 법인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공표일로부터 30년이었는데(1987년 개정으로 공표일로부터 50년으로 연장), 1987년 당시 이미 미키 마우스는 공표일로부터 59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미키 마우스가 1928년의 발표 당시로부터 계속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변경된 미키 마우스가 2차적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1928년의 최초의 출연작인 흑백단편영화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를 보면 그 모습이 오늘날의 미키 마우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 보호의 기산점을 192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미키 마우스를 똑같거나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면, 그 캐릭터에는 대중들에 의해 숨결이 불어 넣어지고, 추억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로보트 태권브이나 이소룡, 주윤발을 떠올리면 그와 함께 '그 시절 그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캐릭터가 때가 되어 '만인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들어가면, 오랜 세월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캐릭터는 대중의 추억과 어울려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해 줍니다. 대중의 사랑과 추억이 깃든 캐릭터를 저작권자가 계속 독점하기만 한다면, 대중은 그만큼 추억을 공유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미키 마우스의 80회 생일상이 미키 마우스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디즈니사의 담장 안에서 디즈니사에 의해서 차려졌다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미키 마우스는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닌, 전국민의 것으로 국민 캐릭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키 마우스(Mickey Mouse)의 문자나 그림을 문자상표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나 도형상표, 또는 상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그에 관해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미키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마치 디즈니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멀리서나마, 며칠 늦었지만 미키 마우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글은 80회의 생일을 맞은 미키 마우스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글입니다. 법률 의견서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IP·IT팀은 [Inews24에 \[지평지성 법률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정기 기고하고 있습니다. 

(특별초대석 - IP · IT칼럼③)

新지식재산권 분쟁..체계적 관리체계 필요



김범희 변호사

과거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분쟁의 중심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에 있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영업비밀과 직무발명, 부정경쟁행위 등 소위 '新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벌어진 소위 천지인 한글입력방식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이후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직무발명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을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의 특허,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질 것인가(사용자주의), 아니면 발명자인 임직원의 것으로 할 것인가(발명자주의)에 대해 각국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일단 발명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직무발명에 관해서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과 발명진흥법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3일부터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발명진흥법에서 일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는 경우 회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양수할 것인지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을 통하여 미리 임직원의 직무발명을 자신이 승계한다는 예약승계 약정을 임직원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약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처리 절차와 회사가 가지는 권리가 다르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예약승계 약정이 있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게 되면 발명자는 회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그간 법원이 재량으로 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발명진흥법에서는 만약 회사가 임직원들과 직무발명의 보상 기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러한 기준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이와 같이 개정법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의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 회사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인지에 관한 직무발명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만약 보상규정을 두더라도 그러한 보상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임직원들과 협의를 제대로 하였다 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논쟁의 핵심은 정당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고, 사용자가 직접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초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에 대해 법원이 여러 판결례를 통하여 나름의 기준을 정립해 왔는데 우리 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해 놓고도 특허등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특허로 공개한 경우 공개된 범위에서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직무발명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것인 것 아니면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의 관리 및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임직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과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혼재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IP-IT팀은 [Inews24에 \[지평지성 법률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정기 기고하고 있습니다. JS Horizon

(법률칼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정원 변호사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2002년경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충북지부를 조사할 일이 있어 국정원에 충북지부의 위치와 방문가능시간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소재지는 비공개대상으로서 국가기밀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충북지부라면 청주에 있을 것이므로 일단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로 갔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아저씨 혹시 국정원 어디 있는지 아세요?”라고 묻자 “당연히 알죠”라고 하며 얼마 뒤 국정원 충북지부 앞에 내려줬습니다.

청주의 택시기사들이 모두 알고 있는 국정원 소재지가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기밀일까요. 법률, 특히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법률은 수범자(受範者)에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국정원 소재지를 국가기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수범자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법률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한 규정도 앞서 언급한 비현실적인 법률 중 하나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비로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래 2002년 12월 30일 도시정비법이 제정될 때에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민간건설업자들이 재건축시장의 과열을 가져왔다는 판단 하에 건설사들이 재건축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춤으로써 재건축시장을 규제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건축시장의 과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수익이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도시정비법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을 찾아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익적 요청이 큰 재개발사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건설사들이 조기에 참여할 유인을 잃은 것이 원인입니다.

정부는 다시 2005년 3월 18일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시공자선정시기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11조의 규율대상에서 재개발을 제외시켰습니다. 동시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처럼 건설사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자 예전처럼 건설사들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이전부터 공동시행자 명목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자 선정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 시기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즉 조합설립인가 이전) 선정한 시공자(공동시행자) 선정의 효력입니다. 2007년말 추진위원회단계의 시공자 선정결의 효력을 부정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2008년 8월에는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시공자 선정 권한은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재판부에서는 추진위원회단계의 시공자선정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그 유·무효를 다룰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여 결과적으로 과거 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자가 사실상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법에 대한 현실적인 국민의 결과였습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자본과 사업수행 노하우를 갖춘 건설사의 참여 없이는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없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아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는 지극히 옳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전제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현실을 직시하여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는 영리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건설사의 조기 참여로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건설사의 초기단계 참여만 막으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재건축 역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시공자 선정시기가 빨라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규제의 초점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설립이전 단계부터 상당한 비용과 사업수행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단계까지 사업시행자의 능력을 보충할 제도를 마련하거나(현행법이 규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는 부족합니다), 아니면 건설사의 조기참여를 인정하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규제의 방향일 것입니다. JS Horizon

(열려라 중국)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



김이태 변호사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公安부, 사법부는 2008년 11월 19일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外资非正常撤离中国相关利益方跨国追究与诉讼工作指引)》(상자자 [2008] 323호)을 발표하여, 중국 당사자에게 적절히 실행할 수 있는 사법구제와 협조를 제공하고 외자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철수하고 도주하는 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최대한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관련 중국 당사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양국의 경제무역거래와 지방사회안정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은 이미 여러 나라와 <민상사사법공조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인도조약> (참조 : <http://www.fmprc.gov.cn/chn/gjw/tyfl/default.htm>)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약은 다국적 민상사 사건을 유효하게 처리하고, 형사범죄를 타격하며, 도주자를 추적하여 체포하기 위한 법적 기초가 되고, 외상투자기업의 비정상적 철수로 인한 경제분쟁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2. 외상투자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중국측 당사자는 즉시 관련 사법주관부서(법원 또는 조사기관)에 민상사 또는 형사 입안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각 주관부서는 자체 계통내부의 업무절차 및 중국과 해당 국가가 체결한 <민상사사법공조조약> 또는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조약에서 규정한 중앙부서를 통하여 외국측에 사법협조를 요청한다. 외국측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은 조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측에 사법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예를 들면, 해당 국가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소환장 및 소장 등 사법문서의 송달, 관련 증거 조사 제출, 혐의자와 자금의 행방에 대한 조사협조, 관련 물품 등에 대한 수사 및 압류 등).

3. 정상적인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실을 준 경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에 관한 규정(2)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二))》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지배주주, 동사 및 회사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외국기업이나 개인 역시 해당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4. 중국당사자가 중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만약 패소한 외국당사자가 중국 내에 집행할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승소한 자는 중국과 해당 국가가 체결한 <민상사사법공조조약>의 관련 규정 또는 패소자의 해외재산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 외국의 관할 법원에 중국법원의 유효한 판결 또는 재정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민상사사법공조조약>은 상호 상대방 국민과 자국 국민에게 동등한 소송권리를 부여하였다. 중국채권자는 이러한 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국 국민은 해외 소송에서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6. 악의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 체납하는 극소수의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련 주관부서는 입안 후 구체적인 사안의 정황에 따라 조약에 규정한 중앙부서 또는 외교적 방법을 통하여 범죄혐의자의 도주국에 인도청구 또는 형사소송 이전청구를 하여, 최대한 범죄혐의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머물렀던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대처를 외교적 역량까지 동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임금 상승,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주중 한국기업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향후 주중 한국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외상투자기업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청산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JS Horizon

(생생 러시아)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최수진 변호사

1. 서언

누구나 분쟁 없이 사업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을 겪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맑은 날이기를 바라지만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삭막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쟁도 사업을 좀더 잘 진행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차분히 대처한다면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생 러시아 칼럼에서는, 본호부터 3회에 걸쳐 러시아의 분쟁해결절차를 연재함으로써 러시아 분쟁해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 보고자 합니다. 독자의 특성에 맞게 분쟁해결절차 중 상사 분쟁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1회에서는 러시아의 분쟁해결기관, 2회에서는 중재법원, 3회에서는 중재원, 국제상사중재원을 살펴 보겠습니다.

2. 분쟁해결기관

가. 개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분쟁은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사법기관에서의 분쟁해결은 법원에서 받는 재판을, 비사법기관에서의 분쟁해결은 법원 외에서의 해결절차를 의미합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사 분쟁의 대부분은 당사자가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체결 당시에 미리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을 선택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후에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 사법기관

러시아는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중재법원(Арбитражный су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i) 연방 법률, 대통령, 상하원, 정부 법규 ii) 연방 주체(субъекты РФ) 법률 등이 헌법에 반하는지 판단합니다. 일반법원은 개인의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관할합니다.

중재법원은, “중재”라는 말의 어감과 달리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사법원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분쟁의 주체가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 법인, 비법인단체, 국가기관도 모두 중재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원을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영문으로 체결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재법원은 영문으로 “arbitrazh court” 또는 “arbitration court”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법기관인 중재원이 “arbitration court” 또는 “arbitrage”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rbitration court”라고만 표기하면, 중재법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중재원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계약서에 “arbitration court”로 표기되어 있을 때에는, 중재법원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중재원을 지칭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외국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들은 대부분 중재법원을 “arbitrazh court”, 중재원을 “arbitration court”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 비사법기관

러시아에서 상사분쟁과 관련된 비사법기관으로는 중재원과 국제상사중재원이 있습니다.

중재원은, 상시적으로 설치된 상설중재원과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성되는 임시중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재원에서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상설중재원으로는 러시아 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원이 있습니다.

국제상사중재원은,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국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며, 분쟁의 내용 또한 국제상사중재원이 관할로 정해놓은 항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관할 범위는, 주로 외국과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항목은 러시아 국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국제상사중재원에서의 해결을 원한다면 국제상사중재원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JS Horizon

(Vietnam LIVE!)

베트남 현지기업 해산에 관한 소고



김주현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Hanoi 이사장

최근 국제적인 경제불황의 여파가 베트남에도 영향을 미쳐,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도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건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등 각종 비용의 증가로 경영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동안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 투자한 한국업체들 중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정부 및 베트남 노동조합 총연맹 으로부터 임금 및 세금을 체납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한국업체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 하노이사무소에도 최근 기업해산 또는 파산 절차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때문인지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 지 염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기업해산 및 기업회생, 파산 등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림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기업해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1. 기업해산 사유

경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 또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기업법에서는 회사정관 상에 기재된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등도 회사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해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청산절차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기업자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절차는 먼저 기업해산결정서를 해산결정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기관과 채권자, 권리, 의무, 이익 등에 관련한 사람, 그리고 직원들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보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액, 채무 변제 기간, 장소, 방법, 채권자의 제소해결 방법과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해산결정서는 기업 본사와 지사에 공고되어야 하며, 법률상 신문 게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면, 기업해산 결정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전자신문에 3회 연속 게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통보 및 공고절차를 거친 후, 기업은 임금채무, 해고 부조금(보조금), 법률규정에 따른 사회보험, 그리고 노동조합 협약 및 노동계약에 따른 노동자의 기타권리, 조세채무(세금채무) 및 기타 그 밖의 채무의 순으로 변제를 하여야 하며, 각종 채무와 기업해산비용을 모두 변제한 후의 잔여 재산은 개인기업주, 사원, 주주 또는 회사 소유주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3. 등록 말소

기업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7일 이내에 기업의 법적대리인은 기업해산과 관련한 서류를 사업자 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기업해산결정문, 채권자 및 변제된 채무액(세금 및 사회보장보험금 완불내역 포함), 근로자 리스트 및 해소된 체불임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Seal, 법인 Tax Code, 세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가 완제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법적 이해관계가 모두 해소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기업해산절차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이사는 위 서류의 진정성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그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미변제 채무나 미납된 세금, 체불 임금에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은 위 서류가 사업자 등록기관에 송부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사업자 등록기관은 기업해산 관련 서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명부에서 해당기업을 삭제함으로써 기업해산절차가 종료됩니다.

4. 해산의 간주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하여야 하며, 기업의 해산 절차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업자 등록기관에 기업해산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업은 해산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등록기관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부에서 해당기업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이사 등은 미변제 채권 및 기타 재정적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JS Horizon

(주목! 이 판례)

광고용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제한과 처벌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8도7061 판결
-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서설

최근 대부분의 핸드폰 사용자들은 대출, 대리운전, 음란사진 등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스팸메시지 차단 기능을 사용해 차단번호와 차단문구를 열심히 설정해 놓아도, 어떻게 된 일인지 메시지 전송자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광고 문구를 약간 조작함으로써 용케 이를 피해 나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은 이러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고,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정통망법에 규정된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규정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해 사실상 최초로 대법원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정통망법의 규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 다음 대상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제한 규정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규정

- ① 현행 정통망법(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은 먼저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위 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 이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보를 전송받은 수신자가 이후 같은 정보를 전송받지 않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전송자에게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 ② 제2항은 전송자가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팩시밀리)’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등에 대해 전송하는 경우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3항은 위 제2항의 예외에 대해 다시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제2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팩시밀리’에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송 시각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이라면 이 때는 다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에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출처(이는 이메일 전송에만 국한됨),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핸드폰에 전송되는 광고 문자메시지에서 “수신거부”, “거부”, “수거” 등의 문구를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5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매체 중 ‘전화와 팩시밀리’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외에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제7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전송되는 광고 문자메시지에서 수신거부방법으로 표시되는 전화번호들이 소위 ‘수신자 부담’의 전화번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④ 한편 제6항은 영리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될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제1호)”,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제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으로 이메일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제3호)” 그리고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제4호)가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러한 조치들 중 제2호에 관한 것입니다.

(2) 벌칙 규정

- ① 정통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 의하면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제50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히거나, 또는 “제50조 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② 한편 위 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정보 전송자가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 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공소사실 및 쟁점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의 자동입력 등 기능을 이용하여 다량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문자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142,750회에 걸쳐 핸드폰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위와 같이 자동 생성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정통망법(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현행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현행 정통망법도 동일, 이하 “이 사건 정통망법 규정”)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정통망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960 판결).

이에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이유의 주된 취지는 “엑셀프로그램 처럼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 생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오로지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와 달리 정통방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과 대상판결의 의의

- (1)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정통방법 규정은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등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2. 12. 18.자 정통방법 일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대법원은 “그러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정통방법 규정의 목적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규정에서 금지된 기술적 조치를 실행한 이상 ‘숫자 조합, 자동 생성’ 행위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2) 나아가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스팸메일 등의 규제를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의 조성도 들어 있는 이상(위 법률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영리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취하면 이 사건 정통방법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동 생성된 수신자의 연락처가 실제로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위반 범죄의 성립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3)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과 그를 이용한 광고의 필요성 역시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사건 정통망법 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사례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판결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해 일종의 출발점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8도7161 판결](#)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최신 법령)

1.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67호)

1.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2008년에는 25%, 2009년에는 22%)로,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2008년, 2009년에는 11%)로 낮추었습니다.
2.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67호\)](#)

2.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73호)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11. 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73호\)](#)

3.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완화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236호)

1.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경제규모의 확대로 기업의 자산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236호\)](#)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272호)

1.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연구·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272호\)](#)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소식)

지평지성 2009년도 시무식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1월 5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체 변호사 및 전문가, 임직원이 모여 2009년도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호원 · 박동영 · 조용환 · 강성 ·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각각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도 기존의 중국 상해 지사, 베트남 호치민 현지법인 및 현재 설립 중인 하노이 사무소 외에 남미, 중동 및 러시아, C.I.S.국가들에 대한 진출을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 자원, 에너지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것으로, 진정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자'고 신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시무식은 전체 변호사·전문가 및 임직원이 서로 신년인사를 나누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년도 시무식 (2009.01.05)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지평지성, (주)벨웨이브 M&A 매각 주관사로 선정

2008년 1월 8일, (주)벨웨이브는 홈페이지에 'M&A 관련공지'를 하였으며, 아이뉴스24도 관련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본 건과 관련하여 (주)벨웨이브의 회생전, 회생신청시의 자문에 이어 이번 회생회사 M&A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매각주관사로 선정되어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아이뉴스24 - 마지막 휴대폰 벤처 벨웨이브 매각 된다](#)

[담당 변호사]



홍성준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단신)

김범희 변호사, 로앤비 강좌 “지적재산권 실무의 쟁점”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는 지난 12월 19일 (주)로앤비가 주최한 기업법무교육 강좌 프로그램에서 “지적재산권 실무의 쟁점”을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업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영업비밀, 상호나 상표 등과 관련한 분쟁'을 실제 경험한 실무 사례를 들어 발표한 것으로 김변호사는 지난 9월 30일에 '저작권·디지털저작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해 1차 강의한 바 있습니다.

위 강의들은 오는 2009년 9월과 12월 (주)로앤비에서 다시 주최할 예정입니다. JS Horizon

김범희 변호사, 저작권위원회 평가회의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는 지난 12월 11일, 저작권위원회가 한중FTA체결을 앞두고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분야 대응방안연구사업의 연구실적'에 대한 외부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저작권위원회에서 열린 '평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위 연구사업은 중국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양 국의 저작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차이, 저작권 보호 현실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저작권 분야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협상 쟁점을 예측,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김변호사는 평가 회의에서 양 국의 손해배상 법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JS Horizon

이소영 변호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법적 이슈'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2008년 12월 22일 교통방송국의 초대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법적 이슈'를 강의하였습니다.

이 강좌는 교통방송의 저작권 관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상 필요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JS 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남분사무소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4층 Tel : (02)2009-7500 Fax : (02)2009-752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610

상해 지사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호치민시티 지사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910-7510 Fax : 84-8-910-7511